

忠清北道議會議員 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忠清北道議會議員 日費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旅費支給)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 (旅費支給)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 (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新 · 舊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改 正
<p>第4條 (旅費支給)議員이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한다.)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p>	<p>第4條 (旅費支給)議員이 <u>會期中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한다.)</u> 또는 <u>委員會에 出席할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u></p>